

IIRI Online Series

신기술과 유엔인권메커니즘

홍 미 화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2022. 11. 14

신기술과 유엔인권메커니즘



홍 미 화 |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스마트 폰의 등장은 사람들의 일상과 사람들이 서로 관계 맺는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인터넷의 보편화와 더불어 스마트 폰의 상용화로 인해 사람들이 방대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늘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동 시간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형태의 관계 맺음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룰 수 있는 일들도 많아졌다. 일단 시장에 나온 형태의 스마트 폰을 보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 및 세대에 기반을 둔 ‘디지털 디바이드’를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스마트 폰은 인간을 “인에이블링(enabling)”하는 신기술이기 때문이다.

“스마트 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터치 인터페이스 기반의 스마트 폰은 신기술로 인해 새롭게 재편되는 사회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간을 오히려 디스에이블링(disabling)하는 기술이었어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상품은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이 함께 해야 해요.”

지난 2022년 9월 30일 서울에서 열렸던 제14차 아시아 인권 포럼, “신기술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영향”을 위한 준비 회의에서 사고로 인해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게 된 한 교수님께서 전해주신 의견이다. 최근 몇 년간 아이폰 보이스오버 기능과 같이 스마트 폰 화면을 만지면 기능이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슨 기능을 만졌는지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스마트 폰에 대한 접근성이 증진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디지털 신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므로 그 발달이 기존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을 답습하지 않도록 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인권이 그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국제사회가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는 불과 10년이 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거시적인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큰 규범적 틀을 논의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혁명이 가져오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더 크고 깊게 영향을 받는 장애인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 보유자에 대한 영향을 짚어보았다는 점에서 한층 발전된 디지털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범적 동향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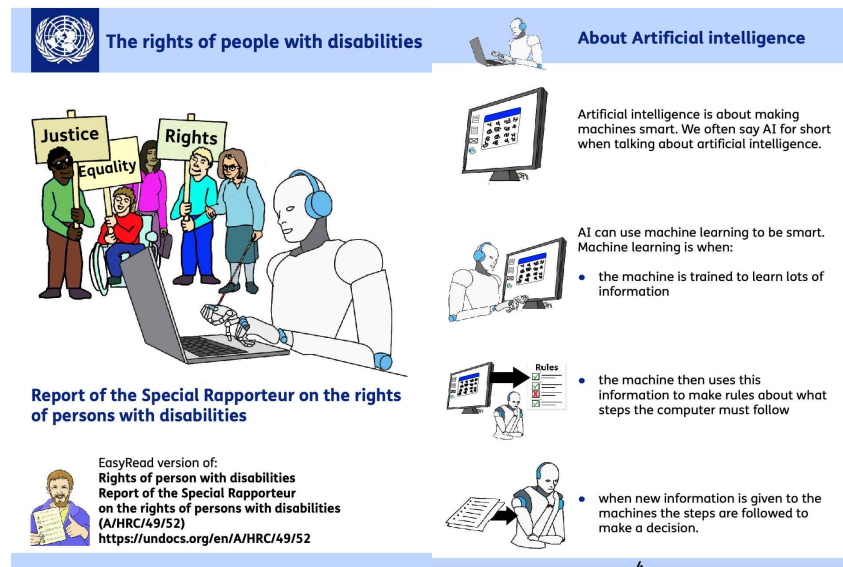
유엔인권메커니즘은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2014, 2020)과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2016) 등에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는 똑같이 온라인에서도 보호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인권침해라고 여겨지는 행위들은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인권침해라고 여겨져야 한다”고 그 기본 입장을 정립했다. 또한,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후속 결의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신기술의 인권에 대한 영향은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새로운 인권 이슈가 등장하면 주제별 특별절차를 구성해서 현안에 대한 인권전문가의 조사를 바탕으로 사안을 먼저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신기술과 인권에 대해서도 2018년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와 2016년 ‘디지털 시대에 표현의 자유’ 및 2018년 ‘온라인상에서의 내용 규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들을 통해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디지털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초기 논의를 진행해왔다. 두 보고서 모두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인권메커니즘이 디지털 신기술의

특성상 인권에 기반한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는 결국은 기술기업의 자율규제에 바탕을 둔 분권화된 이행(decentralized implementation)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논의는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기대어 진행되어 왔다. 즉, 기술기업이 인권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인권에 대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기반으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함께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수많은 디지털 신기술 중에서도 유엔인권메커니즘은 인공지능 기술에 특별하고 긴급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2018년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9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사법집행에 있어 인종프로파일링 예방 및 투쟁’에 대한 일반권고 제36호, 2021년 ‘인공지능과 장애인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이 최근에 발표된 논의들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알고리즘 개발 단계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오프라인 사회의 편견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프라이버시권을 섬세하게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소수인종이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취약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인권 규범의 ‘다중당사자주의(multistakeholderism)’ 원칙에 따라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과 장애인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2021)에서는 인공지능, 자동화된 의사결정,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장애인들의 고용, 교육, 그리고 독립적인 삶에 있어 포용적인 평등을 증진하면서 차별적인 영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림> ‘인공지능과 장애인권리’에 관한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Easy-to-Read’ 버전 (2021)



출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s://www.ohchr.org/en/calls-for-input/2021/report-special-rapporteur-rights-persons-disabilities-artificial-intelligence>)

우리 정부는 유엔인권메커니즘에서의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담론 및 규범 형성 과정에 있어서 그 시작부터 깊이 관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9년 7월 11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안(A/HRC/41/11)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동 결의안은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이 과정에 있어 회원국, 국제기구, 관련 유엔기구, 신기술 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2021년 7월 13일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후속 결의안(A/HRC/47/L.12/Rev.1)이 다시 한번 우리 정부 주도로 채택되었다. 동 결의안은 신기술의 인권 영향에 대한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접근법과 다중당사자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후속 조치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신기술과 인권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2022년과 2023년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하도록 위임(mandate)하기도 했다.

2019년 결의안과 2021년 결의안은 인권이사회의 주요 이사국을 포함하여 각각 총 78개국 및 총 6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결의안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새로운 인권 이슈에 대한 담론 형성과 규범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작’도 중요하지만 일단 모아진 국제적 관심이 구체적인 담론과 성숙한 규범으로 성장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기술기업, 시민사회,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에 기반하여 이슈에 대한 일관된 열정과 높은 전문성으로 무장한 외교력이 요구된다. 최근의 구체적인 논의는 서구 유럽 국가들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유엔인권메커니즘에서 디지털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논의가 프라이버시권을 넘어서 평등,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장애인의 권리 등 보다 포괄적인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확장되고 심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어 책무성 및 그 피해 구제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적 논의를 주도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

저자 소개

홍미화 교수는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 인문학부(영어영문학, 국어국문학 전공)를 졸업하고,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유엔인권메커니즘, 국제인권규범, 분쟁 후 정의, 대량학살이며,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Human Rights, Journal of Peace Research, International Interactions 등에 다수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Email: mhong@kookmin.ac.kr)

